|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 시범에 대한 공고**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1년 제2호  무역의 편리화를 진일보 촉진하고, 화물무역 외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국은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수출대금입금 및 수출세금환급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바, 2011년 12월 1일부터 강소, 산동, 호북, 절강(영파 불포함), 복건(하문 불포함), 대련, 청도지역에서 시범실시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화물무역 외환관리방식 개혁  시범기간에 시범지역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제정한 《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가이드라인》과《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가이드라인 실시세칙》(첨부문건 참조, 이하 ‘시범법규’)을 시행하며, 기업은 수출대금핵소 수속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다.  시범지역 외환국은 기업에 대한 무역외환 관리방식을 현장건별핵소에서 비현장총량조사로 변경하고, 화물무역 외환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화물수출입 및 무역외환수지 건별 데이터를 전면 수집하며, 기업의 화물흐름과 자금흐름의 총체적 매칭정황을 주기적으로 비교 및 감정평가하고, 준법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편의를 도모하며 특수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업을 위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시범지역기업에 대한 동태적 분류관리 실시  시범지역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 외환수지 준법성에 근거, 기업을 A∙B∙C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A류 기업의 수입대금지급증빙을 간소화하여, 수입통관서나 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 중 거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은행에서 직접 외환송금을 처리할 수 있고, 수출대금입금은 연합네트워크조사가 불필요하며, 은행의 외화수금/송금 심사수속 처리는 상응하게 간소화한다. B∙C류 기업의 경우 무역외환수지증빙 심사, 업무유형, 결제방식 등 방면에서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B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은행이 전자데이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C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반드시 외환국에 건별로 등기한 후 처리한다.  시범지역 외환국은 분류감독관리기간 내 기업의 시범법규 준수정황에 결합하여, 분류결과를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A류 기업이 외환관리법규를 위반한 경우, B류 혹은 C류로 강등되며, B∙C류 기업이 분류감독관리기간 내 적법/준법적으로 경영한 경우, 감독관리기간 만료 후 A류로 승격할 수 있다.  3. 수출세금환급 증빙 간소화  시범기간에 시범지역 수출기업은 수출세금환급 신고 시, 종이형식의 수출대금핵소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세무국은 외환국이 제공하는 기업의 수출대금입금 정보와 분류정황을 참고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수출세금환급을 심사한다.  4. 수출통관절차 조정  시범기간에 시범지역기업의 수출통관은 그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대금핵소단을 제출한다.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 개혁을 전국화한 후, 해관총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수출통관절차를 조정하고, 수출대금핵소단을 취소한다.  5. 부문 연합감독관리 강화  시범지역 기업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실신용 마인드를 강화하며,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적법한 경영을 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 해관총국은 진일보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를 실현할 것이며, 협의 메커니즘을 완벽화하고, 감독관리 협력을 형성하며, 각종 규정위반의 과경(跨境) 자금유동을 엄격히 근절하고, 세금편취 및 밀수 등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근절한다.  본 공고에서 언급한 외환관리, 수출세금환급, 수출통관 등 구체적 사항은 관련 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시범기간, 기타 법규와 본 공고가 상충할 경우, 시범지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2011년 9월 9일  첨부문건1:《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 가이  드라인》  2:《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 가이드라인 실시세칙》    첨부문건1.  **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 화물무역(이하 ‘무역’) 외환관리를 완벽화하고, 무역 편의화를 추진하며, 대외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무역항목의 국제결제를 제한하지 않는다.  수출 수입은 규정에 따라 경내로 반입하거나 경외에 보관할 수 있다.  **제3조**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구(이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진실하고 적법한 거래배경이 있어야 하며, 화물수출입과 일치해야 한다.  **제4조** 외화매매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이하 ‘금융기구’)는 반드시 기업이 제출한 거래증빙의 진실성 및 무역외환수지의 일치성에 대한 합리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5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분지기구(이하 ‘외환국’)는 법에 의거하여, 본 가이드라인 제2조 제2관과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6조** 외환국은 수출입화물흐름과 외화수금/송금자금흐름에 맞는 확인조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대한 비현장 총량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조사 (이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구가 처리하는 무역외환수지업무의 준법성과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즉시성 및 완전성, 정확성에 대한 비현장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 외환국은 현장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기업의 외환관리규정 준수 등 정황에 맞추어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행한다.  **제8조**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신용대출에 대한 총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기업의 무역신용대출 규모에 대하여 비율관리를 실시한다.  **제9조** 국제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는 무역외환수지에 필요한 보장 및 통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기업명단 관리**  **제10조** 외환국은 “무역외환수지기업명단”(이하 ‘명단’) 등기관리를 실행하며, 통일적으로 금융기구에 명단을 발포한다. 금융기구는 명단에 불포함된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1조** 기업은 법에 따라 대외무역 경영권을 취득한 후,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외환국에서 명단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 등기정보가 변경된 경우, 외환국에서 변경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경영을 종료하거나 대외무역경영권이 취소된 경우, 외환국에서 말소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외환수지 업무상황 및 준법정황에 근거하여 기업명단을 말소한다.  **제12조** 기업은 무역외환수지 처리 시,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 처리확인서》를 체결하고, 국가 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환국은 명단등기를 새로 처리한 기업에 대하여 지도기간 관리를 실행한다.  **제3장 무역외환수지 관리**  **제13조**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경외와 경내 보세감독구역으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 경외와 경내 보세감독구역에 지급한 수입대금  (2) 외국고객계좌와 경외 기구의 경내계좌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 외국고객계좌와 경외기구의 경내계좌에 지급한 수입대금  (3) 심가공 결전항목의 경내 수취/지급대금  (4) 중개무역항목의 수취/지급대금  (5) 기타 무역과 관련한 수취/지급대금.  **제14조** 기업은 “수출한 자가 외화수금, 수입한 자가 외환송금” 원칙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기부항목의 수출입업무 등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리수입/수출업무는 대리인이 외환송금 및 외화수금을 처리해야 한다. 대리수입업무항목에서, 위탁인이 위탁대리협의에 의하여 외화를 대리인에게 이체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외화매입을 처리할 수 있다. 대리수출업무항목에서, 대리인은 외화수금 이후 위탁대리협의에 의하여 외화를 위탁인에게 이체할 수 있으며, 인민폐로 환전한 후 인민폐를 위탁인에게 이체할 수도 있다.  **제15조** 기업은 무역방식이나 결제방식 및 자금원천 혹은 흐름에 근거하여 관련 증빙에 의하여 금융기구에서 무역외환수지를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구는 기업명단과 분류상태를 조회하고,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사하며, 외환국에 전 항에서 말하는 무역외환수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무역외환수지와 화물수출입의 매칭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 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1)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선수금, 선급금, 지연수취금 및 지연납부금 (2) 기타 보고할 사항  기업은 본 조 전 관의 규정 이외 기타 무역외환수지정보를 자발적으로 외환국에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비현장검사**  **제17조** 외환국은 기업의 일정기간 중 수출입 데이터와 무역외환수지 데이터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총량을 대조하고, 기업의 무역외환수지 진실성 및 수출입과의 일치성을 확인조사한다.  **제18조** 외환국은 무역신용대출과 중개무역 등 특정업무, 및 보세감독구역 기업 등 특정주체에 대하여 특정항목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19조** 외환국은 다음의 기업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무역외환수지와 화물수출입 매칭 정황  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  (2) 특정항목모니터링을 통해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3) 기타 중점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제5장 현장검사**  **제20조** 외환국은 기업의 비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무역외환수지업무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환국은 금융기구가 처리하는 무역외환수지업무의 준법성과 제출정보의 즉시성 및 완전성, 정확성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외환국은 현장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피조사기업이나 처리금융기구에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2) 피조사기업 법정대표인 혹은 그 수권자, 처리금융기구 책임자 혹은 그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진다  (3) 피조사기업과 처리금융기구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한다  (4) 기타 필요한 현장검사방식  피조사단위는 외환국 현장검사에 협조하여, 사실대로 정황을 설명하고, 관련 문건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거부∙저해하거나 기만할 수 없다.  **제22조** 외환국은 본 가이드라인 제21조 제1관 제(3)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현장검사인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한다. 현장검사인원이 2인 미만이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피조사단위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장 분류관리**  **제23조** 외환국은 현장검사 결과에 근거하고 기업의 외환관리규정 준수 등 정황에 결합하여, 기업을 A∙B∙C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제24조** 외환국은 B∙C 류 기업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분류결과를 관련 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기업은 외환국의 분류결론고지서 수취일로부터 7일 업무일 내에 외환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외환국은 이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분류정황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25조**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출한 후 외환국의 재검토를 통해 분류결과를 확정한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금융기구에 기업의 분류관리 정보를 발표한다.  외환국은 기업의 분류관리 정보를 상관 관리부처에 통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외환국은 B∙C 류 기업에 대하여 분류관리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분류결과를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제27조** 분류관리 유효기간 중, A류 기업 무역외환수지에 대하여, 편의화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B∙C 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증빙심사나 업무유형 및 처리절차, 결제방식 등 방면에서 신중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8조** 외환국은 무역외환수지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B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대하여 전자데이터 확인조사관리를 실시한다.  **제29조** C류 기업 무역외환수지업무 및 외환국이 인증하는 기타 업무에 대하여 외환국은 사전 건별등기관리를 실행하며, 금융기구는 외환국이 발급한 등기증명에 의하여 기업을 위한 상관 수속을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30조** 기업과 금융기구가 본 가이드라인 및 기타 외환관리 상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31조** 외환국은 국제수지형세와 외환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무역신용대출관리, 등기관리, 비현장검사 및 분류관리의 구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 보세감독구역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조 및 적용하며, 보세감독구역의 외환관리정책상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 개인 대외무역경영자의 무역외환수지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34조** 수출 수입을 경외에 보관하여 관리할 경우, 화물무역 수출수입 경외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외국고객계좌는 경외기구가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대외국고객 은행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경내은행 외국고객업무부에서 개설한 계좌를 가리킨다.  경내기구가 법에 따라 대외국고객 은행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경내은행 외국고객업무부서에서 개설한 계좌는 경내기구 경외계좌로 간주한다.  **제36조** 국가외환관리국은 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상응한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37조**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본 가이드라인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전의 법규와 본 가이드라인이 상충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문건2:  **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 가이드라인**  **실시세칙**  **제1조** 본 세칙은, 《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을 취급하는 기구(이하 ‘기업’)는 수출 후에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즉시 또는 전액 회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경외에 보관해야 하며, 수입 후에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즉시 또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기업은 대금을 수취한 후 계약의 약정에 따라 화물을 즉시 또는 전액 수출해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약정에 따라 화물을 즉시 또는 전액 수입해야 한다.  **제1장 기업명단 관리**  **제3조** 기업은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후, 《무역외환수지 기업명단 등기신청서》(첨부문건1. 참조),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기업 인감이 날인된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 처리확인서》(이하 《확인서》, 첨부문건2 참조) 및 다음 자료의 유효원본과 기업 인감이 날인된 사본에 의하여, 소재지 외환국에서 “무역외환수지 기업명단”(이하 ‘명단’)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기업법인영업집조》혹은《기업영업집  조》부본  (2)《중화인민공화국 조직기구코드  증》  (3)《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표》, 법에 따라 등록등기가 불필요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혹은《중화인민공화국 대만/홍콩/ 마카오투자기업비준증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4)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외환국은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명단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대외무역경영권이 없는 기업에 확실히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객관적 수요가 있을 경우, 명단등기 처리 시 본 조 제1관 제(3)항에서 규정한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대외무역을 취급하는 보세감독구역 기업(이하 ‘구내기업’)은 《보세감독구역 외환관리방법》에 따라 외환등기수속 처리 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구내기업은 《보세감독구역 외환등기증》을 취득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후 자동적으로 명단에 포함된다.  **제5조** 명단 내 기업의 명칭, 등록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회사유형, 경영범위 혹은 연계방식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상응한 변경문서 혹은 증명서 원본 및 기업 인감이 날인된 사본에 의하여 소재지 외환국에서 명단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명단 내 기업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 30일 내에 자발적으로 소재지 외환국에서 명단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경영을 종료하거나 더 이상 대외무역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2) 공상관리부처에 의하여 영업집조가 말소된 경우  (3) 상무주관부처에 의하여 대외무역경영권이 취소된 경우  **제7조** 명단 내 기업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 외환국은 명단에서 말소할 수 있다.  (1) 본 세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정황이 발생한 경우  (2) 구내기업이 보세감독구역 외환등기 말소수속을 완료한 경우  (3) 연속 2년간 무역외환수지업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4) 외환국이 기업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시, 기업명단 등기정보에서 말하는 연계방식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5) 외환국이 인증한 기타 정황  **제8조** 외환국은 본 세칙 실시 이후 새로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지도기간 관리를 실시한다. 최초 무역외환수지업무 발생일로부터 90일 내에, 외환국은 정책법규나 시스템 실행 등 지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지도기간 종료 후 10일 업무일 내에, 서면자료에 의하여 외환국에 지도기간 발생한 화물수출입과 무역외환수지의 건별 대응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외환국은 “화물무역외환모니터링시스템”(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구에 전국 기업명단을 발표한다. 금융기구는 명단에 불포함된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명단에 불포함된 기업은 외환국에서 명단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장 무역외환수지업무 심사**  **제10조** 본 세칙에서 말하는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경외 및 경내 보세감독구역으로부터 수취한 수출대금, 경외 및 경내 보세감독구역에 지급한 수입대금  (2) 외국고객계좌 및 경외기구의 경내계좌로부터 수취한 수출대금, 외국고객계좌 및 경외기구의 경내계좌에 지급한 수입대금  (3) 심가공결전항목의 경내 수취/지급대금  (4) 중개무역항목의 수취/지급대금  (5) 무역과 관련한 기타 수취/지급대금  **제11조** 기업은 국제수지신고와 무역외환수지 확인조사전용 정보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 정보신고를 처리하고, 무역외환수지 흐름에 근거하여 다음의 신고증빙을 작성해야 한다.  (1) 경외지급(외국고객계좌 및 경내기구의 경내계좌에 대한 지급대금 포함)의 경우,《경외송금신청서》혹은《대외지급/인수통지서》를 작성한다.  (2) 경내지급의 경우, 《경내송금신청서》혹은《경내지급/인수통지서》를 작성한다.  (3) 경외로부터 수취한 경우(외국고객계좌 및 경외기구의 경내계좌로부터 수취한 대금 포함), 《대외수입신고서》를 작성한다.  (4) 경내로부터 수취한 경우, 《경내수입신고서》를 작성한다.  **제12조** 금융기구는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업무 처리 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기업명단 상태와 분류상태를 조회하고,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의 진실성 및 무역외환수지와의 일치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하며, 국제수지신고와 무역외환수지 확인조사전용 정보신고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기업의 무역외환수입은 우선 수출수입 조사대기계좌(이하 ‘조사대기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조사대기계좌의 수입범위는 무역외환수입(수출무역융자항목의 경내금융기구가 제공하는 대금 및 경외회수금 불포함)에 한하며, 지출범위는 인민폐로 환전 또는 기업의 경상항목외화계좌에 입금되고, 외환국에 등기한 기타 외환지출이 포함된다. 조사대기계좌 내의 자금은 상호 이체하지 못하며 계좌자금은 당좌예금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제14조** 금융기구는 기업이 작성한 신고증빙을 심사하고 신고를 완료한 후, 기업을 위해 조사대기계좌 자금의 인민폐로 환전 또는 전출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신고자금의 성질이 중개무역 외환수입이나 외화반환의 경우에는 본 세칙 규정에 따라 상응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심사해야 한다.  **제15조** 기업은 진실하고 적법한 수입대금지급 수요에 따라 사전외화를 매입하여 경상항목 외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금융기구는 기업의 외환송금 혹은 증명서 발급수속 처리 시, 기업이 작성한 신고증빙을 심사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심사해야 한다.  (1) 신용증이나 추심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국제결제관행에 따라 관련 상업증표를 심사한다  (2) COD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대응되는 수입화물통관서 혹은 수입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심사한다  (3) 선급금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수입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심사한다  **제16조** 중개무역 외환수입은 조사대기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기업이 조사대기계좌에서 인민폐로 환전하거나 중개무역 외환수입을 전출할 경우, 금융기구는 기업이 제출한 수출입계약서나 수입 및 지출신고증빙을 심사해야 한다.  동일한 계약항목의 중개무역수입을 인민폐로 환전하거나 전출금액이 상응한 지출금액의 20%(포함)를 초과한 경우, 기업은 외환국에서 무역외환업무 등기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기업은 “수출한 자의 외화수금/수입한 자의 외환송금” 원칙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기부항목의 수출입업무 등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대리수입 및 수출업무는 대리인이 외환송금 및 외화수금을 처리해야 한다. 대리수입업무항목에서, 위탁인이 위탁대리협의에 의하여 외화를 대리인에게 이체할 수 있다면, 대리인은 외화매입을 처리할 수도 있다. 대리수출업무항목에서, 대리인이 외화수금 이후 위탁대리협의에 의하여 외화를 위탁인에게 이체할 수 있다면, 인민폐로 환전하고 인민폐를 위탁인에게 이체할 수도 있다.  **제18조** 수입항목에서 외화반환의 경외 지급인은 원 수취인, 경내 수취인은 원 지급인이어야 한다. 수출항목에서 외화반환의 경내 지급인은 원 수취인, 경외 수취인은 원 지급인이어야 한다.  금융기구가 기업의 무역수입대금 외화반환지급을 처리할 경우, 오류의 외화송금납입으로 발생한 외화반환은, 기존의 외화수금증빙을 심사해야 하며;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외화반환은, 기존의 수입신고증빙 및 수출계약을 심사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기업을 위해 무역외환송금의 반환외화 인민폐로 환전 혹은 이체를 처리할 경우, 오류의 송금으로 발생한 외화반환은, 기존의 지출신고증빙을 심사해야 하며;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외화반환은, 기존의 지출신고증빙 및 수입계약을 심사해야 한다.  외화반환일과 기존의 수취/지급일 간격이 180일(불포함) 이상이거나 특수정황으로 본 조 규정에 따라 외화반환을 처리할 수 없다면, 기업은 외환국에서 무역외환업무 등기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의 수출입무역은 금융기구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객관적 수요로 외화현찰을 사용하여 결제하고, 외화현찰을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 금융기구는 기업이 제출한 수출계약 및 수출화물통관서 등 증빙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폐로 환전 현찰금액이 규정된 입국신고금액에 해당될 경우, 금융기구는 기업이 제출한 해관이 서명날인한 외화현찰 휴대반입신고서 정본도 심사해야 한다.  **제20조** 본 세칙의 규정상 외환국에 등기한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금융기구는 외환국이 발급한《화물무역외환업무등기표》(이하《등기표》, 첨부3 참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등기표》사용정황을 기재해야 한다.  **제21조**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을 심사한 후, 증빙 정본에 외화수금/송금금액 및 기일을 기재하고 업무인감을 날인하며, 관련 증빙 정본 혹은 사본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2조** 금융기구는 무역외환수지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업의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무역외환수지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기업보고와 등기관리**  **제23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업무에 대하여 기업은 화물수출입 혹은 외화수금/송금업무 실제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외환국에 대응되는 예상외화수금/송금 혹은 수출입일자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 30일 이상(포함)의 선수금 및 선급금  (2) 9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수취금 및 지연납부금  (3) 90일 이상(불포함) 신용증 방식으로 결제한 무역외환수지  (4) B∙C류 기업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선수금과 선급금, 및 3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수취금과 지연납부금  (5) 일회계약항목의 중개무역수지일자 간격이 90일(불포함) 이상이고 ‘선수취, 후지급’항목의 외화수금액 혹은 ‘선지급, 후수취’항목의 외환송금액이 등가 50만USD(불포함) 이상인 업무  보고를 완료하고, 예상수출입 혹은 외화수금/송금기일에 미달한 상술한 업무에 대하여, 기업은 실정에 근거하여 관련 보고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규정에 부합되는 외화수금/송금단위와 수입단위가 불일치한 경우, 외화수금 혹은 수입기업은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고, 외화수금 혹은 수입데이터의 주체 변경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본 세칙 제23조 내지 제24조 규정 이외의 무역외환수지와 수출입 매칭에 영향을 주는 정황에 대하여, 기업은 수출입 혹은 외화수금/송금업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기업은 다음의 무역외환수지업무 처리 시, 외환송금, 증명서 발급, 수출무역융자금 제공 또는 조사대기계좌 자금을 인민폐로 환전하거나 전출하기 전에, 서면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외환국에 등기해야 한다.  (1) C류 기업 무역외환수지  (2) B류 기업의 수취가능 및 외환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무역외환수지  (3) 동일한 계약항목의 중개무역수입의 인민폐로 환전 또는 전출금액이 상응한 지출금액의 20%(불포함) 이상을 차지할 경우  (4) 외환국이 등기가 필요하다고 인증한 기타 업무  외환국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화물무역 외환업무 감독관리 인감”이 날인된 《등기표》를 발급한다.  **제4장 비현장검사**  **제27조** 외환국은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하여 매월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대한 비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외환국은 국제수지형세와 외환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확인조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비현장검사에 포함된 데이터는 기업의 최근 12개월 관련 무역외환수지와 화물수출입 데이터가 포함된다.  **제28조** 외환국은 기업의 수출입 및 무역외환수지 데이터에 근거, 무역신용대출 보고서 등 정보에 결합하여, 총량차액과 총량차액비율, 자금화물비율, 무역신용 대출보고서 잔액비율 등 총량조사지표를 설정하여, 기업의 일정기간 중 자금흐름과 화물흐름 편이 및 무역신용대출 잔액변화 등 정황을 판단하고, 총량조사지표가 일정범위를 초과한 기업을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킨다.  외환국은 실정에 근거하여 총량조사지표를 설정하고 조정한다.  **제29조**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신용대출, 수출수입의 경외보관, 내료가공, 중개무역, 경외도급공정, 수출입 외화반환 등 업무, 및 구내기업이나 지도기간 기업 등 주체에 대하여 특정항목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자금흐름과 화물흐름 규모와 구조 등 이상하거나 의심된 정황이 존재하는 기업을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킨다.  **제30조** 외환국은 B∙C류 기업 및 총량조사와 특정항목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지속적 및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표에 비교적 편이 및 연속적 편이가 발생하거나 관련 지표가 반영한 정황이 상호 위배되는 기업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표가 정상을 회복한 기업에 대하여 중점 모니터링을 해제한다.  **제31조** 외환국은 모니터링시스템을 기초로하여 무역외환수지 정황에 대한 거시적 통계와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한다.  **제5장 현장검사**  **제32조** 확인조사기간 중 아래 상황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임의 총량조사지표와 본 지역 지표의 한계값 편이도가 50% 이상인 경우  (2) 임의 총량조사지표가 연속 4개 확인조사기간 본 지역 지표 한계값을 초과한 경우  (3) 선수금 잔액비율과 선급금 잔액비율, 지연수취금 잔액비율 혹은 지연납부금 잔액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4) 내료가공 가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5) 중개무역 수지차액이 지출비율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  (6) 일회 외화반환금액이 등가 50만USD  이상이고 외화반환이 12회 이상 처리된 경우  (7) 외환국이 인증하는 현장검사가 필요한 기타 정황  외환국은 비현장검사 정황에 근거, 지역과 업종, 경제유형 등 특징을 참고하여 상술한 비율과 금액 혹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 외환국은 현장검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현장검사통지서》(첨부4 참조)를 작성하고 발송해야 하며, 다음의 1가지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조사기업에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2) 피조사기업 법정대표인 혹은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진다  (3) 피조사기업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한다  (4) 외환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현장검사 방식  **제34조** 기업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외환국의 현장검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1) 외환국이 기업에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현장검사통지서》 수취일로부터 10업무일 내에, 외환국에 법정대표인 혹은 수권자가 서명하고 단위 인감이 날인된 서면보고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보고내용은 기업의 생산경영정황, 수출입 및 외화수금/송금정황, 자금유입 또는 유출 이상이 발생한 이유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2) 외환국이 기업의 법정대표인 혹은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질 경우, 기업의 법정대표인 혹은 수권자는 《현장검사통지서》 수취일로부터 10업무일 내에 외환국에 관련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3) 외환국이 피조사기업의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기업은 《현장검사통지서》 수취일로부터 10업무일 내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외환국 현장검사인원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4) 외환국이 기타 현장검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외환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준비업무를 완벽화해야 한다.  **제35조** 외환국은 현장검사 정황에 근거, 기업의 현장검사 결과를 결정한다.  **제36조** 비현장검사와 기업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처리금융기구의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외환국은 다음의 1가지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금융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조사금융기구에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2) 피조사금융기구 책임자 혹은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진다  (3) 피조사금융기구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한다  (4) 외환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현장검사 방식  피조사금융기구는 외환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정황을 설명하고, 관련 문건이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피조사기업 혹은 금융기구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해야 한다면, 외환국 현장검사인원은 2인 이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검사인원이 2인 이하이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피조사기업과 금융기구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장 분류관리**  **제38조** 외환국은 현장검사 결과에 근거, 기업의 외환관리규정 준수 등 정황에 따라, 기업을 A∙B∙C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제39조** 확인조사기간 중 기업이 외환관리 상관 규정을 지키고 무역외환수지는 외환국 비현장검사 또는 현장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 A류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제40조** 아래 상황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B류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본 세칙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 중의 하나가 존재하고 현장검사에서 기업이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화물무역 외환업무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4) 외환국 현장검사에서, 규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외환국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 국가 관련 주관부처 요구에 응하여 연합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할 경우  (6) 외환국이 인증하는 기타 정황  **제41조** 아래 상황이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C류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최근 12개월 중 외환관리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여 외환국의 처벌을 받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입안 조사된 경우  (2) 외환국의 현장검사를 저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외환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B류 기업의 분류감독관리 유효기한이 만료되고 외환국의 종합감정평가 결과, 관련 정황은 여전히 B류 기업 표준에 부합될 경우  (4) 외환관리와 관련한 엄중한 규정위반행위를 하여 국가 관련 주관부처 처벌을 받은 경우  (5) 외환국이 인증하는 기타 정황  **제42조** 외환국은 B∙C 류 기업을 확정하기 전에,《분류결론고지서》(첨부5 참조)를 관련 기업에 발송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업무일 내에 외환국에 서면정황설명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진술할 수 있다.  기업이 규정된 시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경우, 외환국은 기업에 대한 분류정황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정황에 근거하여 분류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제43조** 외환국은 금융기구에 기업 분류정보를 발표하고, 기업 분류정보를 관련 관리부처에 통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 B∙C 류 기업의 분류감독관리 유효기한은 1년이다.  **제45조** B∙C 류 기업 분류감독관리 유효기한 만료 시, 외환국은 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관련 외환관리규정 준수정황에 대한 종합감정평가를 하고, 기업의 자금흐름과 화물흐름 편이와 변화 및 규정위반행위 발생여부 등에 근거하여 분류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외환국은 일상관리 중에 기업의 본 세칙 제40조 및 제41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기업의 분류등급을 수시로 하향조정하여, A류 기업을 B류 혹은 C류로 판정하거나, 또는 B류 기업을 C류로 판정할 수 있다.  **제46조** B류 기업은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무역외환수지업무를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송금방식 결제의 경우(선급금과 선수금 제외), 금융기구는 상응한 수출입화물통관서와 수출입계약을 심사해야 하며; 신용증 및 추심방식 결제의 경우, 국제결제관행에 따라 관련 상업증표를 심사하는 이외에, 또한 상응한 수출입계약을 심사해야 하며; 선급금 및 선수금 결제의 경우, 수출입계약과 세금계산서를 심사해야 한다.  (2) 금융기구는 무역외환수지에 대한 전자데이터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취가능 및 외한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무역외환수지업무는,《등기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선수금이나 선급금 및 3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수취금 및 지연납부금에 대하여, 기업은 반드시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4) 기업은 9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납부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며 90일 이상 (불포함)의 외화수금조항이 포함된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기타 무역외환수지업무는, 본 세칙 제2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제47조** C류 기업은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다음의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소재지 외환국에서 건별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외환국은 등기수속 처리 시, 기업이 송금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선급금 및 선수금 제외) 상응한 수출입화물통관서와 수출입계약을 심사하며, 신용증 및 추심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수출입계약과 세금계산서를 심사하고, 선급금 및 선수금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수출입계약과 세금계산서를 심사하며, 일회선급금 금액이 등가 5만USD 이상인 경우, 반드시 금융기구 테스트키 대조를 통한 외국금융기구가 발급한 선급금 은행신용보증서도 심사해야 한다.  (2) 선수금이나 선급금 및 3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수취금 및 지연납부금에 대하여, 기업은 반드시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3) 기업은 90일 이상(불포함)의 장기신용증(기한연장 포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90일 이상(불포함)의 지급연기 및 추심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90일 이상(불포함)의 외화수금조항을 포함한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기업은 중개무역 외환수지를 처리할 수 없다.  (5) 기업이 다국적집단의 집중외화수금/송금 구성원회사인 경우, 해당 기업은 집중외화수금/송금업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기업이 다국적집단의 집중외화수금/송금 주최기업인 경우, 전체 집단의 집중외화수금/송금업무를 정지한다.  (6)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제48조** 수출수입 경외보관업무를 개통한 기업이 B류로 분류된 경우,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기업의 수출수입은 경외계좌에 보관할 수 없으며, 경외계좌를 이용하여 대외결제할 수 없다. 외환국은 경외계좌 잔액의 반입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C류로 분류된 경우, 기업은 분류일로부터 30일 내에 경외계좌를 폐쇄하고 경외계좌 잔액을 반입해야 한다.  **제7장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제49조** 외환국은 무역외환수지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B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대하여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관리를 실시한다.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수출입 실정에 근거하여 수취가능 및 외한송금 한도액을 결정한다.  B류 기업은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 이내에서 무역외환수지를 처리한다.  **제50조** 외환국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B류 기업의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을 결정한다.  (1) 외환국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출입무역 유형에 근거, 비현장검사와 현장검사 정황에 결합하여, 상응한 외화수금/송금비율을 결정한다. 기업의 무역수출입 수취가능 및 외한송금 한도액은 대응되는 외화수금/송금일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수출입화물통관서 거래 총가격과 상응한 외화수금/ 송금비율의 적을 누적한 합에 따라 결정한다.  (2) 선수금의 외화수금가능 한도액과 선급금의 외환송금가능 한도액은 외환국이 비현장검사와 현장검사 정황에 근거하고 기업의 업무특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1조** 금융기구는 B류 기업의 외환송금, 증명서 발급, 수출무역융자금 혹은 조사대기계좌 자금의 인민폐로 환전 또는 전출수속 처리 시, 전자데이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대응되는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을 차감해야 한다.  **제52조** B류 기업의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을 초과하는 무역외환수지업무는 외환국에서 무역외환업무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53조** B류 기업이 대행하는 기타 기업 수출입의 대응되는 외환수지는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제8장 벌 칙**  **제54조** 기업과 금융기구는 본 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이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55조** 기업의 대리수입업무 위탁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송금하거나, 또는 대리수출업무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외화를 수금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외환국은 기한부 외화반입을 명령하고, 외화 도피금액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며, 사건의 경위가 엄중한 경우, 외화 도피금액의 30% 이상에서 등가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6조** 기업이 아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외환국은 시정을 명령하며, 위법금액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건의 경위가 엄중한 경우, 위법금액의 30% 이상에서 등가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인민폐로 환전한 경우, 외환국은 불법인민폐로 환전한 자금의 환입을 명령하고, 위법금액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여, 무역수입대금이 조사대기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하고, 인민폐 환전도 처리함.  (2) 대리수출업무 중 위탁인이 외화를 수금함  **제57조** 기업이 아래 행위를 한 경우,《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환국은 경고를 하고, 위법금액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무역외환수지 처리 시 외채관리규정을 위반  (2) 대리수입업무 중 대리인이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채관리규정을 위반  **제58조** 금융기구가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외환국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0만RMB 이상에서 100만RMB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엄중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외환국은 관련 업무 경영정지를 명령한다.  (1)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치성을 심사하지 않고,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한 경우  (2)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화매매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화폐태환 특허경영기구와 금융기구가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태환 대행기구가 외화매매업무를 처리하며, 본 세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 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조례》 제48조 규정에 근거, 외환국은 시정을 명령/경고 하며, 30만RMB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신고와 무역외환수지 확인조사전용 정보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증빙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 및 자료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수입대금을 조사대기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조사대기계좌 수지범위와 조사대기계좌간 자금의 상호이체 등이 외화계좌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업무등기 등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외환관리기관의 법에 따른 검사 혹은 확인조사를 거부하거나 저해한 경우.  **제60조**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외환국은 3만RMB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이 불완전한 경우  (2) 무역외환수지업무 처리 시,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업의 대응되는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9장 부 칙**  **제61조** 본 세칙에서 말하는 총량조사지표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총량차액이라 함은 기업의 최근 12개월 중 외환국에 의하여 확인조사에 포함된 무역수지 누계차액과 화물수출입 누계차액간 편차를 말한다.  (2) 총량차액비율이라 함은 총량차액과 동기 외환국에 의하여 확인조사에 포함된 해당사의 수출입과 무역외환수지 누적규모간 비율을 말한다.  (3) 자금화물비율이라 함은 기업의 최근 12개월 중 외환국에 의하여 확인조사에 포함된 무역외환수지 누적규모와 동기 수출입 누적규모간 비율을 말한다.  (4) 무역신용대출보고잔액비율이라 함은 기업이 본 세칙 제23조 제1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역신용대출보고서 월말잔액 합계와 기업의 최근 12개월 중 수출입 및 무역외환수지 누적규모간 비율을 말한다.  **제62조** 외환국은 국제수지형세와 외환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무역신용대출관리와 등기관리, 비현장검사 및 분류관리의 구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3조** 구내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본 세칙을 적용하며 보세감독구역 외환관리정책상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인 대외무역경영자의 무역외환수지는 본 세칙이 적용된다.  **제64조** 수출수입의 경외보관 관리는 화물무역 수출수입의 경외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 본 세칙에서 말하는 외국고객계좌라 함은, 경외기구가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대외국 고객은행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경내은행의 외국고객업무부에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경내기구가 법에 따라 대외국 고객은행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경내은행 외국고객업무부에서 개설한 계좌는, 경내기구 경외계좌로 간주한다.  **제66조** 본 세칙과 관련되는 종이형식의 문건자료는 상업증표, 유효증빙, 증명자료 원본 혹은 사본, 및 신청서,《등기표》,《분류결론고지서》 및《현장검사통지서》 원본을 포함하여 중요한 업무방안으로서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해야 한다. 기업과 금융기구 및 외환국은 관련 업무 파일을 적절히 보관하고, 5년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67조** 본 세칙에서 규정한 비율, 금액, 기한은 본값을 포함하며, 본값을 불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세칙에서 규정한 기일은 모두 자연일이며, 업무일로 명확히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8조** 본 세칙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지며, 2011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1: 무역외환수지 기업명단 등기신청서  (생략) 첨부2: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 처리확인서  (생략) 첨부3: 화물무역 외환업무등기표(생략) 첨부4: 국가외환관리국 XX분(지)국 현장  검사통지서(생략) 첨부5: 국가외환관리국 XX분(지)국 분류  결론고지서(생략) |  | **国家外汇管理局、国家税务总局、海关总署关于货物贸易外汇管理**  **制度改革试点的公告**  国家外汇管理局公告2011年第2号  为进一步促进贸易便利化，加强货物贸易外汇管理，国家外汇管理局、国家税务总局、海关总署决定改革货物贸易外汇管理制度、优化升级出口收汇与出口退税信息共享机制，自2011年12月1日起，在江苏、山东、湖北、浙江（不含宁波）、福建（不含厦门）、大连、青岛地区试点。现公告如下：  一、改革货物贸易外汇管理方式  试点期间，试点地区试行国家外汇管理局制定的《货物贸易外汇管理试点指引》和《货物贸易外汇管理试点指引实施细则》（见附件，以下简称试点法规），企业不再办理出口收汇核销手续。  试点地区外汇局对企业的贸易外汇管理方式由现场逐笔核销改变为非现场总量核查，通过货物贸易外汇监测系统，全面采集企业货物进出口和贸易外汇收支逐笔数据，定期比对、评估企业货物流与资金流总体匹配情况，便利合规企业贸易外汇收支；对存在异常的企业进行重点监测，必要时实施现场核查。  二、对试点地区企业实施动态分类管理  试点地区外汇局根据企业贸易外汇收支合规性，将企业分为A、B、C三类。A类企业进口付汇单证简化，可凭进口报关单、合同或发票等任何一种能够证明交易真实性的单证在银行直接办理付汇，出口收汇无需联网核查；银行办理收付汇审核手续相应简化。对B、C类企业在贸易外汇收支单证审核、业务类型、结算方式等方面实施严格监管。B类企业贸易外汇收支由银行实施电子数据核查，C类企业贸易外汇收支须经外汇局逐笔登记后办理。  试点地区外汇局结合企业在分类监管期内遵守试点法规情况，动态调整分类结果。A类企业违反外汇管理法规将被降级为B类或C类，B、C类企业在分类监管期内守法合规经营的，监管期届满后可升级为A类。  三、简化出口退税凭证  试点期间，试点地区出口企业申报出口退税时，不再提供纸质出口收汇核销单。税务局参考外汇局提供的企业出口收汇信息和分类情况，依据相关规定，审核企业出口退税。  四、调整出口报关流程  试点期间，试点地区企业出口报关仍按现行规定提供出口收汇核销单。货物贸易外汇管理制度改革全国推广后，海关总署与国家外汇管理局将调整出口报关流程，取消出口收汇核销单。  五、加强部门联合监管  试点地区企业应当严格遵守相关规定，增强诚信意识，加强自律管理，自觉守法经营。国家外汇管理局与国家税务总局、海关总署将进一步加强合作，实现数据共享；完善协调机制，形成监管合力；严厉打击各类违规跨境资金流动；严厉打击骗税、走私等违法行为。  本公告涉及有关外汇管理、出口退税、出口报关等具体事宜，由相关部门另行规定。试点期间，其他法规与本公告相抵触的，试点地区以本公告为准。  特此公告。  二〇一一年九月九日  附件一：《货物贸易外汇管理试点指引》  附件二：《货物贸易外汇管理试点指引实施细则》  附件一：  **货物贸易外汇管理试点指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完善货物贸易（以下简称贸易）外汇管理，推进贸易便利化，促进涉外经济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制定本指引。  **第二条** 国家对贸易项下国际支付不予限制。  出口收入可按规定调回境内或存放境外。  **第三条** 从事对外贸易机构（以下简称企业）的贸易外汇收支应当具有真实、合法的交易背景，与货物进出口应当一致。  **第四条** 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以下简称金融机构）应当对企业提交的交易单证的真实性及其与贸易外汇收支的一致性进行合理审查。  **第五条** 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依法对本指引第二条第二款、第三条、第四条规定的事项进行监督检查。  **第六条** 外汇局建立进出口货物流与收付汇资金流匹配的核查机制，对企业贸易外汇收支进行非现场总量核查和监测，对存在异常或可疑情况的企业进行现场核实调查（以下简称现场核查），对金融机构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的合规性与报送相关信息的及时性、完整性和准确性实施非现场和现场核查。  **第七条** 外汇局根据现场核查结果，结合企业遵守外汇管理规定等情况，对企业进行分类管理。  **第八条** 外汇局对企业贸易信贷进行总量监测，对企业的贸易信贷规模实施比例管理。  **第九条** 国际收支出现或者可能出现严重失衡时，国家可以对贸易外汇收支采取必要的保障、控制等措施。  **第二章 企业名录管理**  **第十条** 外汇局实行“贸易外汇收支企业名录”（以下简称名录）登记管理，统一向金融机构发布名录。金融机构不得为不在名录的企业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  **第十一条** 企业依法取得对外贸易经营权后，应当持有关材料到外汇局办理名录登记手续。企业登记信息发生变更的，应当到外汇局办理变更登记手续。企业终止经营或被取消对外贸易经营权的，应当到外汇局办理注销登记手续。  外汇局可根据企业的贸易外汇收支业务状况及其合规情况注销企业名录。  **第十二条** 企业办理贸易外汇收支，应当签署《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办理确认书》，承诺遵守国家外汇管理规定。  外汇局对新办理名录登记的企业实行辅导期管理。  **第三章 贸易外汇收支管理**  **第十三条** 本指引所称的企业贸易外汇收支包括：  （一）从境外、境内保税监管区域收回的出口货款，向境外、境内保税监管区域支付的进口货款；  （二）从离岸账户、境外机构境内账户收回的出口货款，向离岸账户、境外机构境内账户支付的进口货款；  （三）深加工结转项下境内收付款；  （四）转口贸易项下收付款；  （五）其他与贸易相关的收付款。  **第十四条** 企业应当按照“谁出口谁收汇、谁进口谁付汇”原则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捐赠项下进出口业务等国家另有规定的情况除外。  代理进口、出口业务应当由代理方付汇、收汇。代理进口业务项下，委托方可凭委托代理协议将外汇划转给代理方，也可由代理方购汇。代理出口业务项下，代理方收汇后可凭委托代理协议将外汇划转给委托方，也可结汇将人民币划转给委托方。  **第十五条** 企业应当根据贸易方式、结算方式以及资金来源或流向，凭相关单证在金融机构办理贸易外汇收支，并按规定进行贸易外汇收支信息申报。  金融机构应当查询企业名录和分类状态，按规定进行合理审查，并向外汇局报送前款所称贸易外汇收支信息。  **第十六条** 对于下列影响贸易外汇收支与货物进出口匹配的信息，企业应当在规定期限内向外汇局报告：  （一）超过规定期限的预收货款、预付货款、延期收款以及延期付款；  （二）其他应当报告的事项。  企业可主动向外汇局报告除本条前款规定以外的其他贸易外汇收支信息。  **第四章 非现场核查**  **第十七条** 外汇局定期或不定期对企业一定期限内的进出口数据和贸易外汇收支数据进行总量比对，核查企业贸易外汇收支的真实性及其与进出口的一致性。  **第十八条** 外汇局对贸易信贷、转口贸易等特定业务，以及保税监管区域企业等特定主体实施专项监测。  **第十九条** 外汇局对下列企业实施重点监测：  （一）贸易外汇收支与货物进出口匹配情况超过一定范围的；  （二）经专项监测发现异常或可疑的；  （三）其他需要重点监测的。  **第五章 现场核查**  **第二十条** 外汇局可对企业非现场核查中发现的异常或可疑的贸易外汇收支业务实施现场核查。  外汇局可对金融机构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的合规性与报送信息的及时性、完整性和准确性实施现场核查。  **第二十一条** 外汇局实施现场核查可采取下列方式：  （一）要求被核查企业、经办金融机构提交相关书面材料；  （二）约见被核查企业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经办金融机构负责人或其授权人；  （三）现场查阅、复制被核查企业、经办金融机构的相关资料；  （四）其他必要的现场核查方式。  被核查单位应当配合外汇局进行现场核查，如实说明情况，并提供有关文件、资料，不得拒绝、阻碍和隐瞒。  **第二十二条** 外汇局按照本指引第二十一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方式进行现场核查，现场核查人员不得少于2人，并出示证件。现场核查人员少于2人或者未出示证件的，被核查单位有权拒绝。  **第六章 分类管理**  **第二十三条** 外汇局根据现场核查结果，结合企业遵守外汇管理规定等情况，将企业分成A、B、C三类。  **第二十四条** 外汇局发布B、C类企业名单前，应当将分类结果告知相关企业。企业可在收到外汇局分类结论告知书之日起7个工作日内向外汇局提出异议。外汇局应当对提出异议企业的分类情况进行复核。  **第二十五条** 对在规定期限内未提出异议或提出异议后经外汇局复核确定分类结果的企业，外汇局将向金融机构发布企业分类管理信息。  外汇局可将企业分类管理信息向相关管理部门通报，必要时可向社会公开披露。  **第二十六条** 外汇局对B、C类企业设立分类管理有效期，并对分类结果进行动态调整。  **第二十七条** 在分类管理有效期内，对A类企业贸易外汇收支，适用便利化的管理措施。对B、C类企业的贸易外汇收支，在单证审核、业务类型及办理程序、结算方式等方面实施审慎监管。  **第二十八条** 外汇局建立贸易外汇收支电子数据核查机制，对B类企业贸易外汇收支实施电子数据核查管理。  **第二十九条** 对C类企业贸易外汇收支业务以及外汇局认定的其他业务，由外汇局实行事前逐笔登记管理，金融机构凭外汇局出具的登记证明为企业办理相关手续。  **第七章 附 则**  **第三十条** 企业和金融机构违反本指引以及其他外汇管理相关规定的，由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等相关法规予以处罚。  **第三十一条** 外汇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和外汇管理需要，对贸易信贷管理、登记管理、非现场核查以及分类管理的具体内容进行调整。  **第三十二条** 保税监管区域企业贸易外汇收支参照适用本指引，保税监管区域外汇管理政策另有规定除外。  **第三十三条** 个人对外贸易经营者的贸易外汇收支适用本指引。  **第三十四条** 出口收入存放境外的管理按照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相关管理规定办理。  **第三十五条** 本指引所称离岸账户，是指境外机构按规定在依法取得离岸银行业务经营资格的境内银行离岸业务部开立的账户。  境内机构在依法取得离岸银行业务经营资格的境内银行离岸业务部门开立的账户，视为境内机构境外账户。  **第三十六条** 国家外汇管理局根据本指引制定相应实施细则。  **第三十七条** 本指引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  **第三十八条** 本指引自2011年12月1日起施行。以前法规与本指引相抵触的，按照本指引执行。  附件二：  **货物贸易外汇管理试点指引**  **实施细则**  **第一条** 依据《货物贸易外汇管理试点指引》及有关规定，制定本细则。  **第二条** 从事对外贸易的机构（以下简称企业）出口后应当按合同约定及时、足额收回货款或按规定存放境外；进口后应当按合同约定及时、足额支付货款。  企业收取货款后应当按合同约定及时、足额出口货物；支付货款后应当按合同约定及时、足额进口货物。  **第一章 企业名录管理**  **第三条** 企业依法取得对外贸易经营权后，需持《贸易外汇收支企业名录登记申请书》（见附1）、法定代表人签字并加盖企业公章的《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办理确认书》（以下简称《确认书》，见附2）及下列资料有效原件及加盖企业公章的复印件，到所在地外汇局办理“贸易外汇收支企业名录”（以下简称名录）登记手续：  （一）《企业法人营业执照》或《企业营业执照》副本；  （二）《中华人民共和国组织机构代码证》；  （三）《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依法不需要办理备案登记的可提交《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或《中华人民共和国台、港、澳投资企业批准证书》等；  （四）外汇局要求提供的其他资料。  外汇局审核有关资料无误后为其办理名录登记手续。  无对外贸易经营权的企业，确有客观需要开展贸易外汇收支业务的，办理名录登记时可免于提交本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资料。  **第四条** 从事对外贸易的保税监管区域企业（以下简称区内企业）按照《保税监管区域外汇管理办法》办理外汇登记手续时，应当签署《确认书》。区内企业在取得《保税监管区域外汇登记证》并签署《确认书》后自动列入名录。  **第五条** 名录内企业的企业名称、注册地址、法定代表人、注册资本、公司类型、经营范围或联系方式发生变更的，应当在变更事项发生之日起30天内，持相应变更文件或证明的原件及加盖企业公章的复印件到所在地外汇局办理名录变更手续。  **第六条** 名录内企业发生下列情况之一，应当在30天内主动到所在地外汇局办理名录注销手续：  （一）终止经营或不再从事对外贸易；  （二）被工商管理部门注销或吊销营业执照；  （三）被商务主管部门取消对外贸易经营权。  **第七条** 名录内企业发生下列情况之一，外汇局可将其从名录中注销：  （一）发生本细则第六条规定情况；  （二）区内企业已办理保税监管区域外汇登记注销手续；  （三）连续两年未发生贸易外汇收支业务；  （四）外汇局对企业实施现场核查时，通过企业名录登记信息所列联系方式无法与其取得联系；  （五）外汇局认定的其他情况。  **第八条** 外汇局对于本细则实施后新列入名录的企业实施辅导期管理。在其发生首笔贸易外汇收支业务之日起90天内，外汇局进行政策法规、系统操作等辅导。  企业应当在辅导期结束后10个工作日内，持书面材料到外汇局报告辅导期内发生的货物进出口与贸易外汇收支的逐笔对应情况。  **第九条** 外汇局通过“货物贸易外汇监测系统”（以下简称“监测系统”）向金融机构发布全国企业名录。金融机构不得为不在名录的企业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不在名录的企业应当到外汇局办理名录登记手续。  **第二章 贸易外汇收支业务审核**  **第十条** 本细则所称的企业贸易外汇收支包括：  （一）从境外、境内保税监管区域收回的出口货款，向境外、境内保税监管区域支付的进口货款；  （二）从离岸账户、境外机构境内账户收回的出口货款，向离岸账户、境外机构境内账户支付的进口货款；  （三）深加工结转项下境内收付款；  （四）转口贸易项下收付款；  （五）其他与贸易相关的收付款。  **第十一条** 企业应当按国际收支申报和贸易外汇收支核查专用信息申报有关规定办理贸易外汇收支信息申报，并根据贸易外汇收支流向填写下列申报单证：  （一）向境外付款（包括向离岸账户、境外机构境内账户付款）的，填写《境外汇款申请书》或《对外付款/承兑通知书》；  （二）向境内付款的，填写《境内汇款申请书》或《境内付款/承兑通知书》；  （三）从境外收款的（包括从离岸账户、境外机构境内账户收款），填写《涉外收入申报单》；  （四）从境内收款的，填写《境内收入申报单》。  **第十二条** 金融机构为企业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时，应当通过监测系统查询企业名录状态与分类状态，按本细则规定对其交易单证的真实性及其与贸易外汇收支的一致性进行合理审查，并按国际收支申报和贸易外汇收支核查专用信息申报规定向外汇局报送信息。  **第十三条** 企业贸易外汇收入应当先进入出口收入待核查账户（以下简称待核查账户）。待核查账户的收入范围限于贸易外汇收入（不含出口贸易融资项下境内金融机构放款及境外回款）；支出范围包括结汇或划入企业经常项目外汇账户，以及经外汇局登记的其他外汇支出。待核查账户内资金不得相互划转，账户资金按活期存款计息。  **第十四条** 金融机构应当审核企业填写的申报单证并完成申报后，为企业办理待核查账户资金结汇或划出手续。对于申报资金性质为转口贸易外汇收入、退汇的，还需按本细则规定审核相应有效凭证和商业单据。  **第十五条** 企业可以根据其真实合法的进口付汇需求提前购汇存入其经常项目外汇账户。金融机构为企业办理付汇或开证手续时，应当审核企业填写的申报单证，并按以下规定审核相应有效凭证和商业单据：  （一）以信用证、托收方式结算的，按国际结算惯例审核有关商业单据；  （二）以货到付款方式结算的，审核对应的进口货物报关单或进口合同或发票；  （三）以预付货款方式结算的，审核进口合同或发票。  **第十六条** 转口贸易外汇收入应当进入待核查账户。企业从待核查账户中结汇或划出转口贸易外汇收入时，金融机构应当审核企业提交的进出口合同、收入和支出申报单证。  同一合同项下转口贸易收入结汇或划出金额超过相应支出金额20%（不含）的，企业应当先到外汇局办理贸易外汇业务登记手续。  **第十七条** 企业应当按照“谁出口谁收汇、谁进口谁付汇”原则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捐赠项下进出口业务等国家另有规定的情况除外。  代理进口、出口业务应当由代理方付汇、收汇。代理进口业务项下，委托方可凭委托代理协议将外汇划转给代理方，也可由代理方购汇。代理出口业务项下，代理方收汇后可凭委托代理协议将外汇划转给委托方，也可结汇将人民币划转给委托方。  **第十八条** 进口项下退汇的境外付款人应当为原收款人、境内收款人应当为原付款人。出口项下退汇的境内付款人应当为原收款人、境外收款人应当为原付款人。  金融机构为企业办理贸易收汇的退汇支付时，对于因错误汇入产生的退汇，应当审核原收汇凭证；对于其他原因产生的退汇，应当审核原收入申报单证、原出口合同。  金融机构为企业办理贸易付汇的退汇结汇或划转时，对于因错误汇出产生的退汇，应当审核原支出申报单证；对于其他原因产生的退汇，应当审核原支出申报单证、原进口合同。  对于退汇日期与原收、付款日期间隔在180天（不含）以上或由于特殊情况无法按照本条规定办理退汇的，企业应当先到外汇局办理贸易外汇业务登记手续。  **第十九条** 企业的进出口贸易应当通过金融机构办理结算。因客观需要使用外币现钞结算的，外币现钞结汇时，金融机构应当审核企业提交的出口合同、出口货物报关单等单证。结汇现钞金额达到规定入境申报金额的，金融机构还应当审核企业提交的经海关签章的携带外币现钞入境申报单正本。  **第二十条** 本细则规定需办理外汇局登记的贸易外汇收支业务，金融机构应当凭外汇局签发的《货物贸易外汇业务登记表》（以下简称《登记表》，见附3）办理，并通过监测系统签注《登记表》使用情况。  **第二十一条** 金融机构按规定审核相关单证后，应当在单证正本上签注收付汇金额、日期并加盖业务印章，并留存相关单证正本或复印件备查。  **第二十二条** 金融机构在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过程中，发现企业存在异常或可疑贸易外汇收支行为的，应当及时向外汇局报告。  **第三章 企业报告和登记管理**  **第二十三条** 符合下列情况之一的业务，企业应当在货物进出口或收付汇业务实际发生之日起30天内，通过监测系统向所在地外汇局报送对应的预计收付汇或进出口日期等信息：  （一）30天以上（不含）的预收货款、预付货款；  （二）90天以上（不含）的延期收款、延期付款；  （三）以90天以上（不含）信用证方式结算的贸易外汇收支；  （四）B、C类企业在分类监管有效期内发生的预收货款、预付货款，以及30天以上（不含）的延期收款、延期付款；  （五）单笔合同项下转口贸易收支日期间隔超过90天（不含）且先收后支项下收汇金额或先支后收项下付汇金额超过等值50万美元（不含）的业务。  对已报告且未到预计进出口或收付汇日期的上述业务，企业可根据实际情况调整相关报告内容。  **第二十四条** 对于符合规定的收付汇单位与进出口单位不一致的情况，收汇或进口企业可向所在地外汇局报告，并办理收汇或进口数据的主体变更手续。  **第二十五条** 对于除本细则第二十三条至第二十四条规定以外的其他影响贸易外汇收支与进出口匹配的情况，企业可在进出口或收付汇业务发生之日起30天内，通过监测系统主动向所在地外汇局报送相关信息。  **第二十六条** 企业办理下列贸易外汇收支业务，应当在付汇、开证、出口贸易融资放款或待核查账户资金结汇或划出前，持书面申请和相关证明材料到外汇局登记：  （一）C类企业贸易外汇收支；  （二）B类企业超可收、付汇额度的贸易外汇收支；  （三） 同一合同项下转口贸易收入结汇或划出金额超过相应支出金额20%（不含）的；  （四）外汇局认定其他需要登记的业务。  外汇局审核企业提交的资料后，出具加盖“货物贸易外汇业务监管章”的《登记表》。  **第四章 非现场核查**  **第二十七条** 外汇局依托监测系统按月对企业的贸易外汇收支进行非现场核查。外汇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和外汇管理需要调整核查频率。  纳入非现场核查的数据包括企业最近12个月的相关贸易外汇收支和货物进出口数据。  **第二十八条** 外汇局根据企业进出口和贸易外汇收支数据，结合其贸易信贷报告等信息，设定总量差额、总量差额比率、资金货物比率、贸易信贷报告余额比率等总量核查指标，衡量企业一定期间内资金流与货物流的偏离和贸易信贷余额变化等情况，将总量核查指标超过一定范围的企业列入重点监测范围。  外汇局根据实际情况设定并调整总量核查指标。  **第二十九条** 外汇局对企业的贸易信贷、出口收入存放境外、来料加工、转口贸易、境外承包工程、进出口退汇等业务，以及区内企业、辅导期企业等主体实施专项监测，将资金流与货物流的规模与结构等存在异常或可疑情况的企业列入重点监测范围。  **第三十条** 外汇局对B、C类企业以及经总量核查与专项监测后纳入重点监测范围的企业进行持续、动态监测。对于指标出现较大偏离、连续偏离或相关指标反映情况相互背离的企业，可实施现场核查；对于指标恢复正常的企业，解除重点监测。  **第三十一条** 外汇局依托监测系统对贸易外汇收支情况进行宏观统计和监测分析。  **第五章 现场核查**  **第三十二条** 对核查期内存在下列情况之一的企业，外汇局可实施现场核查：  （一）任一总量核查指标与本地区指标阈值偏离程度50％以上；  （二）任一总量核查指标连续四个核查期超过本地区指标阈值；  （三）预收货款余额比率、预付货款余额比率、延期收款余额比率或延期付款余额比率大于25%；  （四）来料加工工缴费率大于30%；  （五）转口贸易收支差额占支出比率大于20%；  （六）单笔退汇金额超过等值50万美元且退汇笔数大于12次；  （七）外汇局认定的需要现场核查的其他情况。  外汇局可根据非现场核查情况，参考地区、行业、经济类型等特点对上述比例、金额或频次进行调整。  **第三十三条** 外汇局对需现场核查的企业，应制发《现场核查通知书》（见附4），并可采取下列一种或多种方式实施现场核查：  （一）要求被核查企业提交相关书面材料；  （二）约见被核查企业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  （三）现场查阅、复制被核查企业的相关资料；  （四）外汇局认为必要的其他现场核查方式。  **第三十四条** 企业应当按下列规定如实提供相关资料，主动配合外汇局开展现场核查工作：  （一）外汇局要求企业提交相关书面材料的，企业应当在收到《现场核查通知书》之日起10个工作日内，向外汇局提交由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签字并加盖单位公章的书面报告及相关证明资料。书面报告内容应当包括但不限于企业生产经营情况、进出口及收付汇情况、资金流入或流出异常产生的原因；  （二）外汇局约见企业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的，企业法定代表人或其授权人应当在收到《现场核查通知书》之日起10个工作日内到外汇局说明相关情况；  （三）外汇局现场查阅、复制被核查企业的相关资料的，企业应当在收到《现场核查通知书》之日起10个工作日内准备好相关资料，配合外汇局现场核查人员工作；  （四）外汇局采取其他现场核查方式的，企业应当按外汇局要求做好相关准备工作。  **第三十五条** 外汇局根据现场核查情况，确定企业现场核查结果。  **第三十六条** 在非现场核查和对企业进行现场核查的过程中，发现经办金融机构存在涉嫌不按规定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或报送相关信息行为的，外汇局可采取下列一种或多种方式，对相关金融机构实施现场核查：  （一）要求被核查金融机构提交相关书面材料；  （二）约见被核查金融机构负责人或其授权人；  （三）现场查阅、复制被核查金融机构的相关资料；  （四）外汇局认为必要的其他现场核查方式。  被核查金融机构应当按外汇局要求如实说明情况，提供有关文件、资料。  **第三十七条** 需现场查阅、复制被核查企业或金融机构相关资料的，外汇局现场核查人员不得少于2人，并出示证件。现场核查人员少于2人或者未出示证件的，被核查企业和金融机构有权拒绝。  **第六章 分类管理**  **第三十八条** 外汇局根据现场核查结果，结合企业遵守外汇管理规定等情况，将企业分成A、B、C三类。  **第三十九条** 核查期内企业遵守外汇管理相关规定，且贸易外汇收支经外汇局非现场或现场核查情况正常的，可被列为A类企业。  **第四十条** 存在下列情况之一的企业，外汇局可将其列为B类企业：  （一）存在本细则第三十二条规定情况之一且经现场核查企业无合理解释；  （二）未按规定履行报告义务；  （三）未按规定办理货物贸易外汇业务登记；  （四）外汇局实施现场核查时，未按规定的时间和方式向外汇局报告或提供资料；  （五）应国家相关主管部门要求实施联合监管的；  （六）外汇局认定的其他情况。  **第四十一条** 存在下列情况之一的企业，外汇局可将其列为C类企业：  （一）最近12个月内因严重违反外汇管理规定受到外汇局处罚或被司法机关立案调查；  （二）阻挠或拒不接受外汇局现场核查，或向外汇局提供虚假资料；  （三）B类企业在分类监管有效期届满经外汇局综合评估，相关情况仍符合列入B类企业标准；  （四）因存在与外汇管理相关的严重违规行为被国家相关主管部门处罚；  （五）外汇局认定的其他情况。  **第四十二条** 外汇局在确定B类企业和C类企业前，将《分类结论告知书》（见附5）通知相关企业。如有异议，企业可自收到通知之日起7个工作日内向外汇局提交书面情况说明及相关证明材料进行申述。  企业在规定时间内提出异议的，外汇局应当对其分类情况进行复核，并根据复核情况确定其分类结果。  **第四十三条** 外汇局向金融机构发布企业分类信息，并可将企业分类信息向相关管理部门通报，必要时可向社会公开披露。  **第四十四条** B、C类企业的分类监管有效期为一年。  **第四十五条** B、C类企业分类监管有效期届满时，外汇局应当对其在监管有效期内遵守相关外汇管理规定情况进行综合评估，根据其资金流与货物流偏离的程度、变化以及是否发生违规行为等调整分类结果。  外汇局在日常管理中发现企业存在本细则第四十条、第四十一条规定行为的，可随时降低其分类等级，将A类企业列入B类或C类，或将B类企业列入C类。  **第四十六条** B类企业在分类监管有效期内的贸易外汇收支业务应当按照以下规定办理：  （一）对于以汇款方式结算的（预付货款、预收货款除外），金融机构应当审核相应的进、出口货物报关单和进、出口合同；对于以信用证、托收方式结算的，除按国际结算惯例审核有关商业单据外，还应当审核相应的进、出口合同；对于以预付货款、预收货款结算的，应当审核进、出口合同和发票。  （二）金融机构应当对其贸易外汇收支进行电子数据核查；超过可收、付汇额度的贸易外汇收支业务，金融机构应当凭《登记表》办理；  （三）对于预收货款、预付货款以及30天以上（不含）的延期收款、延期付款，企业须按照本细则规定向所在地外汇局报送信息；  （四）企业不得办理90天以上（不含）的延期付款业务、不得签订包含90天以上（不含）收汇条款的出口合同；  （五）其他贸易外汇收支业务，按照本细则第二章有关规定办理；  （六）外汇局规定的其他管理措施。  **第四十七条** C类企业在分类监管有效期内的贸易外汇收支业务应当按照以下规定办理：  （一）逐笔到所在地外汇局办理登记手续。  外汇局办理登记手续时，对于企业以汇款方式结算的（预付货款、预收货款除外），审核相应的进、出口货物报关单和进、出口合同；以信用证、托收方式结算的，审核进、出口合同和发票；以预付、预收货款方式结算的，审核进、出口合同和发票；对于单笔预付货款金额超过等值5万美元的，还须审核经金融机构核对密押的外方金融机构出具的预付货款保函；  （二）对于预收货款、预付货款以及30天以上（不含）的延期收款、延期付款，企业须按本细则规定向所在地外汇局报送信息；  （三）企业不得办理90天以上（不含）远期信用证（含展期）业务；不得办理90天以上（不含）的延期付款、托收业务；不得签订包含90天以上（不含）收汇条款的出口合同；  （四）企业不得办理转口贸易外汇收支;  （五）企业为跨国集团集中收付汇成员公司的，该企业不得继续办理集中收付汇业务；企业为跨国集团集中收付汇主办企业的，停止整个集团的集中收付汇业务；  （六）外汇局规定的其他管理措施。  **第四十八条** 已开办出口收入存放境外业务的企业被列为B类的，在分类监管有效期内，企业出口收入不得存放境外账户，不得使用境外账户对外支付。外汇局可要求其调回境外账户余额。  被列为C类的，企业应当于列入之日起30日内关闭境外账户并调回境外账户余额。  **第七章 电子数据核查**  **第四十九条** 外汇局建立贸易外汇收支电子数据核查机制，对B类企业贸易外汇收支实施电子数据核查管理。外汇局根据企业贸易进出口的实际情况确定其可收、付汇额度。  B类企业应当在其可收付汇额度内办理贸易外汇收支。  **第五十条** 外汇局按下列方式确定B类企业的可收付汇额度：  （一）外汇局根据企业实际发生的进出口贸易类别，结合非现场核查和现场核查情况，确定相应的收付汇比率。企业贸易进出口可收、付汇额度，按对应收付汇日期在分类监管有效期内的进出口货物报关单成交总价与相应收付汇比率的乘积累加之和确定；  （二）预收货款可收汇额度和预付货款可付汇额度，由外汇局根据非现场核查和现场核查情况，结合企业的业务特点确定。  **第五十一条** 金融机构在办理B类企业付汇、开证、出口贸易融资放款或待核查账户资金结汇或划出手续时，应当进行电子数据核查，通过监测系统扣减其对应的可收付汇额度。  **第五十二条** B类企业超过可收付汇额度的贸易外汇收支业务，应当到外汇局办理贸易外汇业务登记手续。  **第五十三条** B类企业代理其他企业进出口对应的外汇收支纳入电子数据核查范围。  **第八章 罚 则**  **第五十四条** 企业和金融机构应当按照本细则及其他相关规定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对违反规定的，由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以下简称《条例》）等相关规定处罚。  **第五十五条** 企业代理进口业务委托方违反规定付汇，或代理出口业务代理方未按规定收汇的，依据《条例》第三十九条规定，由外汇局责令限期调回外汇，处逃汇金额30%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逃汇金额30%以上等值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六条** 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依据《条例》第四十一条规定，由外汇局责令改正，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违法金额30%以上等值以下的罚款。非法结汇的，由外汇局责令对非法结汇资金予以回兑，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  （一）未正确提供信息，导致贸易收汇未能进入待核查账户，且办理结汇；  （二）代理出口业务，由委托方收汇。  **第五十七条** 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依据《条例》第四十三条规定，由外汇局给予警告，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  （一）办理贸易外汇收支违反外债管理规定；  （二）代理进口业务，代理方未付汇，且违反外债管理规定。  **第五十八条** 金融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依据《条例》第四十七条规定，由外汇局责令限期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或逾期不改的，由外汇局责令停止经营相关业务：  （一）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审核交易单证的真实性及其与外汇收支的一致性，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  （二）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办理结汇、售汇业务。  货币兑换特许经营机构、金融机构签约外币代兑机构办理结售汇业务，违反本细则规定，依照前款规定处罚。  **第五十九条** 有下列行为之一的，依据《条例》第四十八条规定，由外汇局责令改正，给予警告，处30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进行国际收支统计申报和贸易外汇收支核查专用信息申报；  （二）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提交有效单证、资料或者提交的单证、资料不真实；  （三）未按本细则及相关规定将贸易收汇纳入待核查账户，待核查账户收支超范围、待核查账户之间资金相互划转等违反外汇账户管理规定；  （四）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办理贸易外汇业务登记等手续；  （五）拒绝、阻碍外汇管理机关依法进行检查或核查。  **第六十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外汇局处3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留存相关资料或留存不全；  （二）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登录监测系统扣减企业对应可收付汇额度；  （三）未按照本细则及相关规定向外汇局报告。  **第九章 附 则**  **第六十一条** 本细则所列总量核查指标含义如下：  （一）总量差额是指企业最近12个月内被外汇局纳入核查的贸易收支累计差额与货物进出口累计差额之间的偏差；  （二）总量差额比率是指总量差额与该企业同期被外汇局纳入核查的进出口和贸易外汇收支累计规模之间的比率；  （三）资金货物比率是指企业最近12个月内被外汇局纳入核查的贸易外汇收支累计规模与同期进出口累计规模之间的比率；  （四）贸易信贷报告余额比率是指企业根据本细则第二十三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进行贸易信贷报告的月末余额合计与企业最近12个月内进出口和贸易外汇收支累计规模之间的比率。  **第六十二条** 外汇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和外汇管理需要，对贸易信贷管理、登记管理、非现场核查以及分类管理的具体内容进行调整。  **第六十三条** 区内企业贸易外汇收支参照适用本细则，保税监管区域外汇管理政策另有明确规定的除外。  个人对外贸易经营者的贸易外汇收支适用本细则。  **第六十四条** 出口收入存放境外的管理按照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相关管理规定办理。  **第六十五条** 本细则所称离岸账户，是指境外机构按规定在依法取得离岸银行业务经营资格的境内银行离岸业务部开立的账户。  境内机构在依法取得离岸银行业务经营资格的境内银行离岸业务部门开立的账户，视为境内机构境外账户。  **第六十六条** 本细则涉及的纸质文件资料，包括商业单据、有效凭证、证明材料的原件或复印件，以及申请书、《登记表》、《分类结论告知书》以及《现场核查通知书》的原件，均应作为重要业务档案留存备查。企业、金融机构以及外汇局应当妥善保管相关业务档案，留存5年备查。  **第六十七条** 本细则规定的比率、金额、期限均含本值，明确规定不含本值的除外。  本细则规定的日期均为自然日，明确规定为工作日的除外。  **第六十八条** 本细则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自2011年12月1日起施行。  附1：贸易外汇收支企业名录登记申请书  附2：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办理确认书  附3：货物贸易外汇业务登记表  附4：国家外汇管理局XX分（支）局现场核查通知书  附5：国家外汇管理局XX分（支）局分类结论告知书 |